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전결 귀하
110-043

서울고등검찰청

2014. 7. 14.

수 신 안진걸

귀하

발 신 서울고등검찰청

제 목 항고사건처분통지

검 사 원 성 준



김원배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하였으므로 알
려드립니다.

	사 건 번 호	2014 고불항 제 6138 호
	년 월 일	2014. 7. 14.
처 분	결 과	<p>결정주문 : 항고기각</p> <p>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 이 유 : 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비 고

- 항고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문

▣ 항고인 귀하

검사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귀하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이란?

1. 의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및 절차

가. 신청권자

- 고소인(범죄 피해자 등 형소법상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제124조(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 제125조(독직폭행, 독직가혹 행위),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고발인
- ※ 재정신청권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처리절차

-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정신청서 및 수사관계서류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고,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고기각 통지서 수령 \Rightarrow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불기소처분 검찰청에 재정신청서 제출 \Rightarrow 서울고등검찰청 경유 \Rightarrow 서울고등법원 송부

3. 비용부담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2 및 제122조의4).

- 증인·감정인·통역인·변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여비·숙박료
-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